

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 건설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

2015년 12월 15일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건설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10월 6일,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
제2차 건설복지위원회(2015.12. 3.)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찬용 감사담당관)

가. 상정 이유

도시경관 개선 및 보행자의 보행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도환경에 맞게 도시시설물을 최적화하는 도시비우기 사업에 대한 추진 기본원칙,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제도화하여 도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1) 도시비우기사업의 목적(안 제1조)
- 2) 도시비우기사업의 추진 기본원칙(안 제3조)
- 3) 도시비우기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
(안 제7조 ~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" 생략 "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생 략)

5. 토 론 요 지 : 이미자 위원 수정안 동의

6. 수정안의 요지 : 별첨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)

수정 동의안

조 례 안	수 정 안
제8조(도시비우기협의회 구성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④ 위원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. <u>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	제8조(도시비우기협의회 구성) ① (조례안과 같음) ② (조례안과 같음) ③ (조례안과 같음) ④ 위원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. <u><단서 삭제></u>